

| | |
|-----------|----------------------|
| 의안번호 | 제154호 |
| 의결 연월일 | 2007년 월 일 (제264회)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54 |
|----------|-----|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조례와 규칙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팀제운영에 맞게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을 개선하며
- 상위법령에 의거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자격 보완 (안 제8조제2항제4호)

- 타 위원회 위원 자격 조건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격조건 보완

나. 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 개선 (안 제8조제5항)

- 팀제 운영에 맞게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개선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조직 구성조건 명시 (안 제9조제5항)

- 관련법령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종전에는 도세 부과징수 규칙에 명시되어 있었음

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9조의2제2항)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세”를 “충청북도 도세”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령”을 “「지방세법령」”으로 한다.

제5조 중 “충청북도세부과 징수규칙”을 「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조교수”를 “부교수”로 하고,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

며, “간사는 도세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도세담당사무관으로” 를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으로 하고

제8조제2항·같은조 제4항·같은조 제8항 중 “적부심사위원회” 를 “위원회” 라 한다.

제8조제6항 및 같은 조 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을 “위원회” 로 하며, “6인 이상 15인” 을 “15명” 으로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과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팀·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⑥위원회의 위원 중 제5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4. 그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6인 이상 15인 이하”를 “15명 이내”로 하며, “위촉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팀·과장, 토지정보 사무를 담당하는 팀·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그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4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팀·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9조의4제3항 중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하고,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4제4항부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 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 <u>충청북도 도세</u> ----- ----- -----.</p> |
| <p>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도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u>지방세법령</u>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p>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 ----- ----- 「<u>지방세법령</u>」-----.</p> |
| <p>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충청북도세부과 징수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p> | <p>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 「<u>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u>」 -----.</p> |
| <p>제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도지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u>납세자권리현장</u>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이하 생략)</p> | <p>제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u>충청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p> |
|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도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p> |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 -----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 -----</p> |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이하 생략)

1~3. (생략)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세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도세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

-----,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 -----

위원회-----

-----(이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부교수-----

5. 그밖에 -----

③위원-----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

-----,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사무-----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⑥ <삭제>

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삭제>

⑥위원회-----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③위원회 -----
-----15명-----
-----.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과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팀·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⑥위원회의 위원 중 제5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

| | |
|---|--|
|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p> <p>①(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p> | <p>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1. <u>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u></p> <p>2. <u>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u></p> <p>3. <u>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u></p> <p>4. <u>그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⑧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⑩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p> <p>①(현행과 같음)</p> <p>② -----</p> |
|---|--|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5명 이내-----
-----, 위원-----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팀·과장, 토지정보 사무를 담당하는 팀·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그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신설>

제9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생략)
- 2. (생략)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팀·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③-----

보궐 위원-----
-----남은 기간-----
-----.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 | |
|--|--|
| <p><u>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⑥ (생략)</p> | <p><u>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u></p> <p>⑥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련 》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

□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⑥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영 제58조의 구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5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

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제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9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의4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9조의5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

제128조(조직 및 구성) ①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

장은 지방세 담당국장이 되고 지방세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지방세관련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4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관련 》

□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

제131조(조직 및 구성) ①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세 담당국장이 되고 지방세 담당과장 및 지적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지방세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4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

□ 지방세법

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자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